

2019.12.1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안내

I. 개요

국제상업회의소(ICC) 에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Incoterms)'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 주요사항

1. Incoterms 의의

-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
- Incoterms 202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 규칙은 총 11가지로 운송 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 구분 방법임
- 무역거래당사자 간의 의무와 비용, 위험이전시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주요 개정 내용

가. DAT 조건의 삭제 및 DPU 조건의 신설

구분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인도 규칙	DAT (Delivered At Terminal)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인도 지점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 후 인도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 후 인도

- DAT 조건 사용 시 매도인의 양하 의무는 포함하나 터미널을 제외한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할 경우 DA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함
- 반면 DAP 조건은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없어 거래조건 결정 시 어려움 발생
- 이에 따라 지정한 목적지에서 양하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DPU 조건 신설
- 단, DPU 조건 사용 시 매도인이 자신이 물품을 인도할 장소에서 양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함

2019.12.1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안내

II. 주요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나. CIP 조건의 보험 부보 수준 확대

구분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인도 규칙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부보 범위	CIF, CIP 모두 최소 담보 조건 부보 (협회적하약관 C)	CIF 최소담보조건(협회적하약관C) CIP 최대담보조건(협회적하약관A)

- CIF 및 CIP 조건에서의 적하보험 부보 수준 이원화
- CIF조건 : 당사자 합의에 의해 더 높은 부보비율의 보험 가입 가능 (매수인 부담)
- CIP조건 : 당사자 합의에 의해 더 낮은 부보비율의 보험 가입 가능 (매도인 부담)

다. FCA 조건의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지시 의무 추가

구분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인도 규칙	FCA (Free Carrier)	
부보 범위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 제공	[추가] 당사자 합의 시 매수인은 물품 적재를 나타내는 운송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할 것을 운송인에게 지시하고, 매도인은 운송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

- FCA조건 :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였을 때 위험이 이전되므로 수취식선하증권(Recived B/L)의 발행이 일반적임
- 다만 신용장 사용 시 선적식 선하증권 (Shipped B/L, On-board B/L) 발행 요구 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선적식선하증권 발행 지시 및 매도인의 선적식 선하증권 제공 의무 추가를 통한 법리적 문제 해결

2019.12.1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안내

II. 주요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라. FCA 및 D 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수단 허용

구분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FCA Terms	매수인의 제3자 운송계약	매수인 스스로 운송 가능
D Terms	매도인의 제3자 운송계약	매도인 스스로 운송 가능

- 매도인과 매수인이 운송계약 또는 직접 운송 허용을 통한 실무 반영

마. 조달(Procure) 규정 삽입

구분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Procure 허용	FAS, FOB, CFR, CIF	FAS, FOB, CFR, CIF, FCA, CPT, DAP, DPU, DDP

- 조달은 연속매매, 즉 운송 중 전매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해상으로 운송되는 1차 상품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일해상운송규칙(FAS, FOB, CFR, CIF) 에 적용되었으나 그 외 규칙에서도 운송 중 전매를 허용하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함

바. 명칭 변경

- Guidance Note (사용지침서) → Explanatory Note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 시행일자 : 2020.01.01